

#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9. 02.(금)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공동주택과 - 34831 호(2022.09.0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9층 9개 동, 총 992세대(전용면적 84㎡A 442세대 / 84㎡B 155세대 / 99㎡A 147세대 / 99㎡B 28세대 / 115㎡A 219세대 / 115㎡B 1세대)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 관리사무소 1개소, 경비실 2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어린이놀이터 3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주민운동시설 1개소, 주민편의시설(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GX룸, 라커/샤워실, 건식사우나,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다함께돌봄센터(실내놀이터), 개인오피스(5개실), 스터디룸(2개실) 각1개소) 등

■ 입주시기 : 2025년 12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주관 업체 안내

구분	시행 수탁자	시행위탁사	시공사 / 분양주체
회사명	(주)하나자산신탁(214-86-34082)	(주)디엔아이(741-81-00959)	DL이앤씨 (605-82-78070)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김해시 김해대로 2492번길5, 3층(삼정동)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구분	주택건설 공사감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소방 및 정보통신 공사감리
회사명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청림이앤씨
감리금액	₩3,769,033,540원 (VAT 별도)	₩654,827,664원 (VAT 별도)	₩360,000,000원 (VAT 별도)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약을 통해 주택전시관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의 내용은 분양주체 홈페이지(www.elif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55-335-1777)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공업체, 분양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09. 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는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2021.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김해시 고시 제2020-299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입니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적용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은 청약통장 불필요

※ 일반공급시 청약통장 신청 자격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본 주택은 주택형별 청약경쟁률(청약 미달 주택형은 제외)이 발생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청약자격 조건 : 해당지역(김해시)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미사용
  - 청약자격 제한 : 1. 주민등록표상 김해시가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 / 2. 유주택자 / 3. 본 공동주택에 당첨된 자(계약자, 부적격, 미계약자, 예비입주자 선정에 참여한 계약자 및 미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 비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미적용	미적용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09월 14일(수)	09월 15일(목)	09월 16일(금)	09월 22일(목)	09월 23일(금)~09월 28일(수)	10월 05일(수)~10월 09일(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주택전시관</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주택전시관</li> <li>-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555-4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주택전시관</li> <li>-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555-4번지</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주택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공고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나 이후 법령 개정 및 정책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청약 신청자 안내사항

## 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③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2.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표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50%)	130%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20%)	160%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신혼부부	우선공급(50%)	배우자소득 無	100%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배우자소득 有	120%	7,450,721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10,424,797원
	일반공급(20%)	배우자소득 無	140%	8,692,508원	10,081,133원	10,256,501원	10,891,755원	11,527,009원	12,162,263원
		배우자소득 有	160%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 산정기준

구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 증빙 확인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국민연금 * 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 관리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주택전시관 비치)	* 접수장소	

※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7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 관련 유의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



득을 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추첨제로 청약 신청하는 자

■ 자산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초과하였으나, <표2>의 부동산(건물+토지)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첨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부동산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 초과 시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표2> 부동산(건물+토지)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4. 중복청약 및 중복당첨시 처리기준

- 청약신청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으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주택전시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 6.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다자녀 가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합니다.
- 각 주택형별로는 최하층 배정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신청 주택형에 최하층 배정물량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최하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분양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 신청자도 최하층 주택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신청방법	① 최하층 주택 배정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7.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되며, 취소된 주택은 예

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8. 재당첨 제한에 관한 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9.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 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 및 그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공급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분양권 취소 등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 입주자 사전 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예정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11.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1. 세대당 주택면적 및 대지면적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표기	세대당 주택면적(m <sup>2</sup> )						세대별 대지면적(m <sup>2</sup>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공급 면적(m <sup>2</sup> )			그 밖의 공용 면적(m <sup>2</sup> )		계약면적(m <sup>2</sup>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소계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기타공용 면적	지하 주차장											
분양주택	2022000602	01	84.9986A	84A	84.9986	25.4467	110.4453	4.5989	44.7816	159.8258	46.4279	442	44	44	89	44	13	234	208	17
		02	84.9974B	84B	84.9974	27.0022	111.9996	4.5990	44.7809	161.3795	46.4273	155	15	15	30	15	5	80	75	6
		03	99.9051A	99A	99.9051	29.5153	129.4204	5.4055	52.6351	187.4610	54.5702	147	-	15	-	-	4	19	128	6
		04	99.9951B	99B	99.9951	30.9513	130.9464	5.4104	52.6825	189.0393	54.6193	28	-	3	-	-	1	4	24	1
		05	115.5239A	115A	115.5239	33.5011	149.0250	6.2506	60.8638	216.1394	63.1015	219	-	22	-	-	7	29	190	8
		06	115.5239B	115B	115.5239	33.5027	149.0266	6.2534	60.8642	216.1442	63.1028	1	-	-	-	-	-	-	1	0
	합계											992	59	99	119	59	30	366	626	38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 0.3025또는 m<sup>2</sup> ÷ 3.3058)
- 주거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환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 면적에서의 기타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 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 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15A와 115B는 동일 타입이며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오차 면적 정리를 위해 115B타입의 면적을 편입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세대별 대지면적은 공동주택 총 대지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등에 따라 세대별 대지면적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오차면적에 대해서 115B에 산입하였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각종 홍보홍보물에 표현된 주택형 등은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주택전시관 방문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택공급 면적(주거전용 면적+주거공용 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2. 아파트 공급 금액 및 계약금잔금 등의 납부 시기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약금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115A,B 제외)	잔금 30% (115A,B 40%)
									계약시	2023-02-24	2023-08-25	2024-02-23	2024-08-23	2025-02-25	2025-08-25	입주 시
84.9986	84A	104동 (1호)	1층	11	446,300,000	151,215,000	295,085,000	-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133,890,000

		105동 (1,3,4호)	2층	18	455,800,000	151,215,000	304,585,000	-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136,740,000	
		106동 (1,3,4호)	3층	18	465,300,000	151,215,000	314,085,000	-	46,530,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139,590,000
		107동 (1,3,4,5호)	4~9층	100	470,000,000	151,215,000	318,785,000	-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108동 (1,3,4호)	10~19층	170	474,800,000	151,215,000	323,585,000	-	47,480,000	47,480,000	47,480,000	47,480,000	47,480,000	47,480,000	47,480,000	47,480,000	142,440,000
		109동 (1,3,4호)	20층 이상	125	479,500,000	151,215,000	328,285,000	-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143,850,000
84.9974	84B	104동 (2호)	1층	1	452,600,000	153,349,000	299,251,000	-	45,260,000	45,260,000	45,260,000	45,260,000	45,260,000	45,260,000	45,260,000	135,780,000	
		105동 (2호)	2층	6	462,200,000	153,349,000	308,851,000	-	46,220,000	46,220,000	46,220,000	46,220,000	46,220,000	46,220,000	46,220,000	138,660,000	
		106동 (2호)	3층	6	471,800,000	153,349,000	318,451,000	-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141,540,000	
		107동 (2호)	4~9층	36	476,700,000	153,349,000	323,351,000	-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143,010,000	
		108동 (2호)	10~19층	60	481,500,000	153,349,000	328,151,000	-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144,450,000	
		109동 (2호)	20층 이상	46	486,300,000	153,349,000	332,951,000	-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145,890,000	
99.9051	99A	102동 (1호) 103동 (1,2,3호) 104동 (3,4호)	1층	3	523,000,000	177,202,800	314,361,091	31,436,109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56,900,000	
			2층	6	534,100,000	180,963,000	321,033,636	32,103,364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160,230,000	
			3층	6	545,200,000	184,724,000	327,705,455	32,770,545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163,560,000	
			4~9층	36	550,800,000	186,622,000	331,070,909	33,107,091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165,240,000	
			10~19층	58	556,400,000	188,519,000	334,437,273	33,443,727	55,640,000	55,640,000	55,640,000	55,640,000	55,640,000	55,640,000	55,640,000	166,920,000	
			20층 이상	38	561,900,000	190,382,000	337,743,636	33,774,364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168,570,000	
99.9951	99B	102동 (2호)	2층	1	540,400,000	183,098,000	324,820,000	32,482,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162,120,000	
			3층	1	551,700,000	186,926,000	331,612,727	33,161,273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165,510,000	
			4~9층	6	557,300,000	188,824,000	334,978,182	33,497,818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167,190,000	
			10~19층	10	562,900,000	190,721,000	338,344,545	33,834,455	56,290,000	56,290,000	56,290,000	56,290,000	56,290,000	56,290,000	56,290,000	168,870,000	
			20층 이상	10	568,500,000	192,619,000	341,710,000	34,171,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170,550,000	
115.5239	115A	101동 (1,2,3,4호) 102동 (3,4호) 103동 (4,5호)	1층	5	602,200,000	204,037,000	361,966,364	36,196,636	60,220,000	60,220,000	60,220,000	60,220,000	60,220,000	60,220,000	-	240,880,000	
			2층	9	615,000,000	208,374,000	369,660,000	36,966,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	246,000,000
			3층	9	627,800,000	212,711,000	377,353,636	37,735,364	62,780,000	62,780,000	62,780,000	62,780,000	62,780,000	62,780,000	62,780,000	-	251,120,000
			4~9층	46	634,200,000	214,879,000	381,200,909	38,120,091	63,420,000	63,420,000	63,420,000	63,420,000	63,420,000	63,420,000	63,420,000	-	253,680,000
			10~19층	80	640,600,000	217,048,000	385,047,273	38,504,727	64,060,000	64,060,000	64,060,000	64,060,000	64,060,000	64,060,000	64,060,000	-	256,240,000
			20층	70	647,000,000	219,216,000	388,894,545	38,889,455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	258,800,000

115.5239	115B	102동 (4호)	이상 20층 이상	1	647,000,000	219,216,000	388,894,545	38,889,455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	258,800,000
----------	------	--------------	-----------------	---	-------------	-------------	-------------	------------	------------	------------	------------	------------	------------	------------	---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비(유상옵션), 제세공과금(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공급 면적(주거전용 면적 및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기타공용 면적 및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되며, 납부순서는 연체금을 공제한 후 지정 납부금액 공제 순으로 계산됩니다.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BNK경남은행	207-0141-3947-0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2동 1502호 계약자 → '1021502홍길동' / 106동 702호 계약자 → '1060702홍길동')
- 세대별로 부여되는 분양대금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 3.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급 금액 및 계약금·잔금 등의 납부 시기

#### ■ 추가선택품목 I(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일정			비고
		계약금 10% (계약 시)	중도금 10% (2023-02-24)	잔금 80% (입주시)	
84A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84B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99A	17,000,000	1,700,000	1,700,000	13,600,000	
99B	17,000,000	1,700,000	1,700,000	13,600,000	
115A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115B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 ■ 추가선택품목 I(발코니 확장비) 납입계좌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I (발코니 확장비)	BNK경남은행	207-0146-3391-03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701호 계약자 → '1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등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다용도실 등)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으로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으며,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또한 입주 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4. 추가선택품목 II (유상옵션) 공급 금액 및 계약금잔금 등의 납부 시기

- 추가 선택품목II(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등)은 주택전시관(분양사무소)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추가선택품목 2(유상옵션)은 ㈜하나자산신탁과 무관하며,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II(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I(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로 진행되며, 추가선택품목II(유상옵션)의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위치(변경)	설치 대수	판매가격내역	제조사	비고
				판매가격		
84A	ALT1	거실+침실1	2	3,600,000	삼성/LG	택1 홈네트워크연결기능포함 와이파이기능장착
	ALT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6,550,000		
84B	ALT1	거실+침실1	2	3,600,000	삼성/LG	택1 홈네트워크연결기능포함 와이파이기능장착
	ALT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6,550,000		
99A	ALT1	거실+주방+침실1	3	5,300,000	삼성/LG	택1 홈네트워크연결기능포함 와이파이기능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7,800,000		
	ALT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공간	6	9,350,000		
99A 수납강화형	ALT1	거실+주방+침실1	3	5,300,000	삼성/LG	택1 홈네트워크연결기능포함 와이파이기능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7,800,000		
99B	ALT1	거실+주방+침실1	3	5,300,000	삼성/LG	택1 홈네트워크연결기능포함 와이파이기능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7,800,000		
115	ALT1	거실+주방+침실1	3	5,350,000	삼성/LG	택1 홈네트워크연결기능포함 와이파이기능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	9,400,000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가전사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삼성, LG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고 (삼성의 경우 무풍에어컨만 제공) 공기청정기는 미장착된 일반형 제품입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및 상품모델	판매가격 (VAT포함)	비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set	오브제컬렉션set +인출식서랍장	84A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 대형 인출식수납장	BC4S1AA1 (G) BC3K1AA1 (G)	8,20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불가 인출식 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84B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 (G) BC3K1AA1 (G)	6,95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불가 인출식 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99A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 (G) BC3K1AA1 (G)	8,60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불가 인출식 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99A (수납강화형)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 (G) BC3K1AA1 (G)	8,15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불가 인출식 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99B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 (G) BC3K1AA1 (G)	8,60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불가 인출식 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115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 (G) BC3K1AA1 (G)	8,60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불가 인출식 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비스포크set+ 인출식서랍장	84A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대형 인출식 수납장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RQ34A7(9/8)45AP	8,10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 불가 인출식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satin)		
		84B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인출식 수납장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RQ34A7(9/8)45AP (satin)	6,85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 불가 인출식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99A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인출식 수납장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RQ34A7(9/8)45AP (satin)	8,50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 불가 인출식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99A (수납강화형)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인출식 수납장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RQ34A7(9/8)45AP (satin)	8,05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 불가 인출식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99B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인출식 수납장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RQ34A7(9/8)45AP (satin)	8,50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 불가 인출식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115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인출식 수납장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RQ34A7(9/8)45AP (satin)	8,50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 불가 인출식수납장은 타입별로 상이함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전타입	삼성	삼성 식기세척기 (12인용)	DW60T7065SS	890,000	택1
			SK매직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와이드 (14인용)	DWA-90R5B	1,390,000	
			LG	LG DIOS 식기세척기 (12인용)	DUB22SB2	1,200,000	
전기오븐	전기오븐	전타입	SK매직	컨벡션 스팀 오븐	EON-B401SA	650,000	택1
			SK매직	IOT 스팀 오븐	EON-B440SA	1,050,000	
전기쿡탑	하이브리드쿡탑	전타입	SK매직	2인덕션+ 1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ERA-BT030	800,000	택1 가스3구쿡탑미제공하고업그레이드함
	인덕션		SK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4구	IHR-BQ40E	1,990,000	
주방TV	스마트 주방 TV	전타입		13" 음성인식 스마트 주방TV	-	800,000	택

■ 선택형 평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품 목	적용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판매가격 (VAT포함)	비고
선택형평면	수납강화형 평면	99A		대형인출식수납장 + 복도팬트리장(시스템선반포함) + 창호주변 디자인패널	5,480,000	택

■ 붙박이 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품 목	적용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	-----	-------	-----	------	------	----

				(VAT포함)		
불박이장	침실1 드레스룸 가구	84A	ALT1	대형화장대+불박이장	3,77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불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3,670,000	
		84B	ALT1	대형화장대+불박이장	3,42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불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3,320,000	
		99A	ALT1	대형화장대+불박이장	3,99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불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3,890,000	
		99B	ALT1	대형화장대+불박이장	3,60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불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3,500,000	
	115	ALT1	대형화장대+불박이장	4,25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불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4,150,000		
	침실1 불박이장	84A	침실1	침실1 불박이장	2,570,000	
		84B	침실1	침실1 불박이장	2,570,000	
		99A	침실1	침실1 불박이장	2,570,000	
		99B	침실1	침실1 불박이장	2,670,000	
		115	침실1	침실1 불박이장	2,770,000	
	침실2 불박이장	84A	침실2	침실2 불박이장	1,370,000	
		84B	침실2	침실2 불박이장	1,370,000	
		99A	침실2	침실2 불박이장	1,450,000	
99B		침실2	침실2 불박이장	1,450,000		
115		침실2	침실2 불박이장	1,450,000		

■ 현관 특화상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품목	적용주택형	-	구성내용	판매가격 (VAT포함)	비고
현관상품	현관장	전타입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1,500,000	
			ALT1	3연동 슬라이딩 (클리어)	1,800,000	택1
	ALT2	3연동 슬라이딩 (그레이)				
	ALT3	3연동 슬라이딩 (브론즈)				

■ 마감재 특화상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선택	구 성	판매가격 (VAT포함)	비고	
바닥마감	84A	ALT1	골든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	1,75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1,750,000	
		ALT3	노르딕플렉스 (143mm)		1,750,000	
	84B	ALT1	골든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	1,77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1,770,000	
		ALT3	노르딕플렉스 (143mm)		1,770,000	
	99A	ALT1	골든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알파공간)	2,13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2,130,000	
		ALT3	노르딕플렉스 (143mm)		2,130,000	
	99A (수납강화형)	ALT1	골든플렉스 (143mm)	(거실+주방(연장)+복도+각침실+복도팬트리)	2,13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2,130,000	

			ALT3	노르딕플렉스 (143mm)		2,130,000			
		99B	ALT1	골든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	2,10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2,100,000			
			ALT3	노르딕플렉스 (143mm)		2,100,000			
			ALT3	노르딕플렉스 (143mm)		2,100,000			
		115	ALT1	골든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	2,47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2,470,000			
			ALT3	노르딕플렉스 (143mm)		2,470,000			
주방마감	엔지니어드 스톤	84A	ALT1	알파마요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주방상부장 조명+아일랜드 상판	1,550,000	택1 세라믹 패널 디자인 선택에 따라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2	실버쉐이드		1,550,000			
		84B	ALT1	알파마요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주방상부장 조명+아일랜드 상판	1,620,000	택1 세라믹 패널 디자인 선택에 따라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2	실버쉐이드		1,620,000			
		99A	ALT1	알파마요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주방상부장 조명+아일랜드 상판	1,610,000	택1 세라믹 패널 디자인 선택에 따라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2	실버쉐이드		1,610,000			
		99B	ALT1	알파마요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주방상부장 조명+아일랜드 상판	2,000,000	택1 세라믹 패널 디자인 선택에 따라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2	실버쉐이드		2,000,000			
		115	ALT1	알파마요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주방상부장 조명+아일랜드 상판	1,720,000	택1 세라믹 패널 디자인 선택에 따라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2	실버쉐이드		1,720,000			
		거실마감	거실 아트월	84A	ALT1-1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STATUARIO ORO (무광)	7,070,000	택1 주방엔지니어드스톤 선택에 따라 세라믹

		ALT1-2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STATUARIO GRIGIO (무광)	7,070,000	패널 디자인은 선택이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셰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셰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1-3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IMPERIAL IVORY (무광)	7,070,000	
		ALT2-1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ORO (무광)	16,700,000	
		ALT2-2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GRIGIO (무광)	16,700,000	
		ALT2-3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IMPERIAL IVORY (무광)	16,700,000	
	84B	ALT1-1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STATUARIO ORO (무광)	5,750,000	택1 주방엔지니어드스톤 선택에 따라 세라믹 패널 디자인은 선택이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셰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셰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1-2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STATUARIO GRIGIO (무광)	5,750,000	
		ALT1-3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IMPERIAL IVORY (무광)	5,750,000	
		ALT2-1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ORO (무광)	15,300,000	
		ALT2-2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GRIGIO (무광)	15,300,000	
		ALT2-3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IMPERIAL IVORY (무광)	15,300,000	
	99A	ALT1-1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STATUARIO ORO (무광)	7,350,000	택1 주방엔지니어드스톤 선택에 따라 세라믹 패널 디자인은 선택이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셰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셰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1-2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STATUARIO GRIGIO (무광)	7,350,000	
		ALT1-3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IMPERIAL IVORY (무광)	7,350,000	
		ALT2-1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ORO (무광)	18,200,000	
		ALT2-2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GRIGIO (무광)	18,200,000	
		ALT2-3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IMPERIAL IVORY (무광)	18,200,000	
	99B	ALT1-1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STATUARIO ORO (무광)	5,850,000	택1 주방엔지니어드스톤 선택에 따라 세라믹 패널 디자인은 선택이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셰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셰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1-2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STATUARIO GRIGIO (무광)	5,850,000		
ALT1-3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주방1개면)	IMPERIAL IVORY (무광)	5,850,000		
ALT2-1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ORO (무광)	16,900,000		
ALT2-2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GRIGIO (무광)	16,900,000		
ALT2-3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주방1개면+복도2개면)+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IMPERIAL IVORY (무광)	16,900,000		

	115	ALT1-1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	STATUARIO ORO (무광)	6,350,000	택1 주방엔지니어드스톤 선택에 따라 세라믹 패널 디자인은 선택이 제한됨 (엔지니어드스톤 알파마요/ 세라믹 무광 : STATUARIO GRIGI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 무광 : STATUARIO ORO) (엔지니어드스톤 실버쉐이드/세라믹무광 : IMPERIAL IVORY)	
		ALT1-2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	STATUARIO GRIGIO (무광)	6,350,000		
		ALT1-3	세라믹패널 (거실 1개면)	IMPERIAL IVORY (무광)	6,350,000		
		ALT2-1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 주방1개면+복도2개면(1개면 ↳자))+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ORO (무광)	18,600,000		
		ALT2-2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 주방1개면+복도2개면(1개면 ↳자))+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STATUARIO GRIGIO (무광)	18,600,000		
		ALT2-3	세라믹패널(거실 2개면, 주방1개면+복도2개면(1개면 ↳자))+디자인패널(거실창주변)	IMPERIAL IVORY (무광)	18,600,000		
	거실 디자인 패널	84A		거실창주변+거실1개면 +복도 일부면		1,000,000	세라믹패널 동일 부위 선택시 중복선택불가
		84B		거실창주변+거실1개면 +복도 일부면		1,000,000	
		99A		거실창주변+거실1개면 +복도 일부면		1,100,000	
		99B		거실창주변+거실1개면 +복도 일부면		1,100,000	
		115		거실창주변+거실1개면 +복도 일부면		1,170,000	

■ 욕실 특화상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구 성	판매가격 (VAT포함)	비고
욕실	욕실복합환풍기 (욕실1+욕실2)	전타입	복합환풍기(욕실1+욕실2)	870,000	
	세면대하부장 (욕실1+욕실2)	전타입	세면대 하부장 (욕실1+욕실2)	1,450,000	
	욕실장간접등&센서미등 (욕실1+욕실2)	전타입	욕실장간접등+센서미등 (욕실1+욕실2)	400,000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욕실2)	전타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1+욕실2)	970,000	

■ 조명 및 디밍제어 시스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구 성	판매가격 (VAT포함)	비고	
조명& 디밍제어시스템	거실우물천장일체형조명	84A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디밍제어시스템	3,750,000		
		84B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디밍제어시스템	3,750,000		
		99A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디밍제어시스템	4,450,000		
		99B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디밍제어시스템	4,450,000		
		115	거실,주방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디밍제어시스템	8,500,000	거실, 주방 설치	
	침실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84A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각 침실)	420,000	
		84B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각 침실)	420,000	

		99A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각 침실 + 알파룸)	560,000	
		99A 수납강화형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각 침실)	420,000	
		99B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각 침실)	420,000	
		115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각 침실)	560,000	

## ■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세부사항 (계약일정, 계약방법, 약정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 (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제품의 모델 및 사양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시 동제조사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민원과 제품에 대한 하자발생 시 제조자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모델, 상품구성 및 디자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침실1)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에는 일반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 되어 반영되었으므로 금액변동 없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붙박이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 등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쿨탑/인덕션은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가스쿨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하이브리드 쿨탑/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LG 오브제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상기 공고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수납가구와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결합가구의 구성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공고 외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LG오브제의 도어 팬널 재질,색상은 분양공고와 주택전시관 건립세대에 전시된 범위 내에서만 선택가능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오브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콘센트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 주방TV의 음성인식 기능 및 WEB/APP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입주한 뒤 개별적으로 인터넷 가입 후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 주방TV 미선택 세대는 별도로 주방TV를 설치할 수 있는 전원 및 통신, TV 케이블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중 가전과 불박이가구 설치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현관장 옵션 선택시 오픈형 신발장 내에 추가로 설치되는 신발살균기 및 에어브러쉬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장 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조명은 별도의 스위치 없이 현관 센서에 의해 동작됩니다.
- 침실1 화장대에 설치되는 등기구는 화장대 크기에 따라 설치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선택 시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벽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침실1 및 드레스룸 내 창호 커튼박스는 불박이장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튼박스 크기(폭)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다운라이트, 화재감지기 등)
- 현관중문은 시공 상 중문을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유리 포함)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세라믹 패널 및 디자인 패널 옵션 선택 시 마감뚜개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 (디자인월 및 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목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세라믹 패널 본 공사 시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디자인 패널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과 거실 아트월(세라믹 패널)을 모두 선택할 경우 조화로운 공간 구성을 위하여 선택조건을 제안하여 드렸으며 공고문상 제안된 조합으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미설치 시 욕실 안쪽에 욕실배기팬이 설치되며, 복합 환풍기 설치 시 욕실 배기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되어 반영되어있습니다.
- 욕실장간접등&센서미등 선택 시 세대내 상부에 있는 다운라이트가 센서 미등 겸용 제품으로 변경되며, 스위치 OFF 시에만 센서 기능이 작동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세대의 천장 시트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직간접 조명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 세대는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으로 인해,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와 우물천장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 시 입주 후 고객이 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 스위치와 배선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옵션 미선택 세대는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에 설치되는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전구색~주광색)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거실에 설치되는 디밍 제어시스템은 색온도 조절기능은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주택전시관 건립호실에 전품목 전시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전시관에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추후 안내예정	추후 안내예정	추후 안내예정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301동 701호 계약자 → '3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99A	99B	115A	115B	합 계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7	2	-	-	-	-	9
	장애인	12 (경남 7, 부산 3, 울산 2)	4 (경남 2, 부산 1, 울산 1)	-	-	-	-	16
	장기복무 재대군인	5	2	-	-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0	3	-	-	-	-	13
	중소기업 근로자	10	4	-	-	-	-	1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4	15	15	3	22	-	99
신혼부부 특별공급		89	30	-	-	-	-	11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	5	4	1	7	-	30
생애최초 특별공급		44	15	-	-	-	-	59
합 계		234	80	19	4	29	-	36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특별공급 공통 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li> </ul> </li> </ul>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b>-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b>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0%;">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30%;">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김해시, 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김해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김해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b>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li> <li>※ 단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함. 단,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li> </ul>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8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은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 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부한 분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 기관

일반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담당과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경남도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국가유공자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②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됨
- ③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김해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②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③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④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1.01. ~ 03.31.	전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04.01. ~ 06.30.	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합니다.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할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분으로,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함.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합니다.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④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1.01. ~ 03.31.	전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04.01. ~ 06.30.	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b>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b>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증빙 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IV.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김해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외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는 주택형별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용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로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추첨의 방법)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추첨의 방법)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①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자가 기타지역(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V.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VI.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신청방법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2.09.14(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주택전시관(김해시 부원동 555-4번지)에서 현장접수 가능 (현장접수 : 10:00~14:00)</li> </ul>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일반공급	일반공급 1순위	2022.09.15(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일반공급 2순위	2022.09.16(금)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등,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 중 유공자 및 장애인 등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대행접수는 불가능하오니, 현장방문 시 서면신청서를 통한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Ⅶ. 청약 신청방법

## 1. 인터넷 신청(PC · 모바일)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분양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신청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김해시 1년 이상 거주)", 그 외 김해시 1년 미만 거주,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순위를 구분하므로 지역 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 일자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2. 방문신청

### ■ 특별공급(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주택전시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구분		구비사항				
특별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주택전시관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li> <li>·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li> </ul>			
	제3자 대리신청시	<p>· <b>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b></p>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일반공급(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접수)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을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시	<p>· <b>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b></p>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됨.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가 확인하며,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사업주체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VII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1.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자격서류 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당첨자)
일시	2022.09.22.(목)	2022.09.23.(금)~2022.09.28.(수)	2022.10.05.(수)~2022.10.09.(일)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주택전시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555-4번지)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의 전산검색 결과 일정과 당첨자 서류 접수가 지연될 경우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의 정부 시책에 따라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분양주체 대표번호(055-335-1777)로 사전방문예약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주택전시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 신청자(특별공급 신청자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 일 이후 자격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분양주체 주택전시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분양주체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9.22 (목) ~ 2022.10.01 (토) (10일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2.09.2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2. 당첨자 제출서류

### ■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 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기간 확인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_기타지역 접수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기관 증명서류	해당기관장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명부로 대체
다자녀 특별 공급	0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본인 작성	* 견본주택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자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로 한함)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주 전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서류 제출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자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주 전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서류 제출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모두 작성)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0	소득증빙 서류	구성원 전원	*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	

				빙서류 참조 ]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단, 상기 5개년도 서류 중 전년도 소득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부동산소유현황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모두 작성)
	0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가산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자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자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미만 미혼인 미혼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자 직계존속	*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노부모 특공 점수 불가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0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 장소 비치)		
0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유의사항 (제증명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_기타지역 접수자
		0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자	청약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본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인 경우 만65세 이상 고령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0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자 직계존속	*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자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자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0	사업주체 요청 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0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0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공동(개별)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포함하여 발부]
	0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0		해당 구비서류	청약자격 이상에 따른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3. 계약 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계좌가 모두 다르며, 계약금 확인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수입인지 ※ 기재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1금융권 및 우체국 발행 가능)
	③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가능
	⑤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예정] 및 증빙자료

	※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① 위임장, 인감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서명 날인 시 본인만 계약 가능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세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함]
- 부적격 청약, 공급 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 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후당첨된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릅니다.

## 4. 분양대금 납부, 중도금 대출 관련 안내

- 분양대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앞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 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앞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알선은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시행위탁자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 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무이자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시행위탁자가 납부합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변경시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분양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항(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IX.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관련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서류의 결격, 관계 법령 위반 및 기타)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상기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발견 시 계약 취소)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분양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 및 당첨자는 주택형별로 제시된 공급금액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분양 홈페이지(www.elife.co.kr)에 변경내용을 포함한 정정공고를 청약접수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청약신청 시 변경 및 수정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115B의 분양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숫자의 단수 조정으로 전용면적 비율과 차이가 납니다.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자 자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2022년 06월 23일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세대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84A, 99A, 115A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단지 조경선형, 조경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식재 공사중 토심 확보등의 사유로 지표높이가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기상이변, 문화재의 발굴 및 전염병 발생, 원자재 수급 불균형, 노사분규, 파업 등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법원의 공사중지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관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시공사는 (주)대림, 디엘이앤씨(주)이며, 대표사인 디엘이앤씨(주)가 본 사업의 설계, 시공, 준공, 분양, 입주, 하자, 민원처리를 종합 관리합니다.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 CS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커뮤니티 내 공간을 통합CS센터로 2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지구 · 단지 여건 등 안내

## ■ 주택전시관 관련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건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주택전시관에 따르며,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그린카페, 선큰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건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건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건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저,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약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에어컨 실외기실내 환기장비, 환기조절기, 조명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VR에 표현되지 않은 각종 배선기구류 (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 및 설비 배관류 (가스배관, 계량기, 입상배관, 수전 등), 세대 분전함, 각종 점검구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 주방TV(음선 선택) 설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체결 전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피난구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되며 최상층, 최하층 등 전세대가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방성 확보 및 입면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창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형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
-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상 99㎡A타입의 '팬트리'는 분양홍보관 및 분양홍보물에 '알파공간'으로 정정 표기하여 전시되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설비배관 및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 2층(필로티 포함)은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세대 내 창측에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며, 실제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타입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정물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주택전시관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진동, 소음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릴창 근처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장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및 주거전용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시공을 위하여 시공관련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세대 환기 장치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욕실스피커폰, 천장형 전동빨래건조대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후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TV(옵션 선택)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 창호 개폐, 가전제품, 주방용품 배치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차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일부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인조잔디)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콘센트,소방설비, 디퓨저, 바택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가 테라스에 설치되어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주방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수구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평면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 수량 및 소비전력,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 전기분전반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팬트리, 현관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통합 또는 개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현관 팬트리/창고 내부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창고 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 및 삭제 되거나 거실 복도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침실1(안방)벽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침실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는 주택전시관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팬던트 조명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며, 별도의 주방 식탁용 팬던트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일반 유선전화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콘센트, 스위치(일괄소동 스위치 포함), 월패드 등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2층(필로티 포함) 확장형 세대는 세대 내 방법을 위하여 창측에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며, 비확장형 세대는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저, 공기질센서(주방인근 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등의 설치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전기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음.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설계관련 유의사항

- 공사 중 경비실 및 진입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지반고)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층고, 지하 주차장레벨, 램프의 위치, 옹벽의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정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규모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표시,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담장,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는 각 동 옥상에 설치되며, 태양광 패널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의 의한 빛반사, 진동,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웨더스테이션(기상측정장비) 1개소 설치되며, 웨더스테이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웨더스테이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09동에 설치되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의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옥외안테나는 아파트 옥상 102동, 104동, 105동, 108동에 설치되고,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는 아파트 옥상 102동, 104동, 105동, 108동에 설치됩니다.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 지하층 설치는 지하1층 102동 PIT, 108동 PIT에 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경관조명, 옥외보안등에 의해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마감재의 석재 설치에 의한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일부 주택의 세대간벽이 건식벽체로 구성되어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조건이행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용한 사업지로 태양광 패널이 각 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심의과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계획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형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옥외보안등 및 식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입구 부근 103동 및 부출입구 부근 101동, 102동은 아파트 출입 및 주차장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전 등 비상상황, 주기적 유지관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될 시 101동, 106동 부근 D/A를 통해 매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뒷밭 조성 시,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 하여야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우나 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냉난방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선큰 구역에는 사우나 시스템 가동을 위한 설비(실외기 등), 부대시설 및 사우나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 근처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이나 부대시설의 오배수패키지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옥외 단지 감시용 카메라가 일부동 옥상에 설치됩니다. 해당 감시용 카메라는 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감시가 목적이므로 정확한 얼굴인식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전기인입을 위해 한국전력 PAD가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되므로 미관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사업지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이 지하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일부 통신시스템이 공동주택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1과 2 간의 전력간선 케이블트레이가 공동주택 일부 지하층을 통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0.7km 이격 지점에 약취를 배출하는 축사가 있고, 1km 반경 내 약취관리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현재에도 가축분뇨 약취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서는 약취방지를 위해 6m 높이의 메타세케이아를 집중 식재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남측에 농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 본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굴 된 문화재와 발견 될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유적 보존조치에 의하여 단지 내 문화재공원에 보존 될 예정이며, 보존관리주체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존조치 된 매장 문화재의 관리)에 따라 유적관리대상 등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김해시장)가 주기적으로 보존관리 및 점검할 예정입니다.
- 초등학교는 주촌선천도시개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초등학교 용지(주촌면 선지리 1469번지)에 신설학교((가칭)주촌선천2초 개교 예정, 개교 시기는 미정)를 설립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 개교 시까지 “김해외동초등학교”로 임시 배치할 예정이며, 임시 배치 시 사업시행자(주)디엔아이) 부담(무상)으로 통학차량 운영(통학차량보호탑승자 및 안전요원 배치 등)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인근 유수지가 인접하고 있어 일부 동에서는 벌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101동 지하1층 통합커뮤니티(피트니스, G/X룸, 건식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 103동 지하1층 통합커뮤니티(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107동 지하1층 경로당, 108동 지하1층 어린이집, 109동 지하1층 관리사무소, 101동 및 103동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109동 1층 인접하여 키즈스테이션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의무 설치·운영 및 지자체 협약체결사항입니다.(21.1.12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대상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설계 인가에 따라 단지주변 도로폭, 도로차선, 도로레벨, 완충녹지, 신호등, 무단횡단 방지횡스 등의 계획이 변경 또는 신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분의 높이차 변경 등의 단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수지에 설치예정인 신설목교는 추후 개발계획에 따라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의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휴게공간과 필로티, 단지 내 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 환풍, 쓰레기 분리수거장, 탑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남서측 20m 도로, 북측 회전교차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는 관할 교육청 소관으로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등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제연 웅름은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통합커뮤니티, 관리사무소 등)이 인접한 동은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바람(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정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배치도상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수수 배수시설, 저수조, 기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수경시설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당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및 옹벽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방음벽은 남측에 농공시설의 소음 및 분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발생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구조계획 상 벽체 및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과 분리되어 있으나 단지 차량출입구는 혼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 인근에 설치되며,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채광창(탑라이트)이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각 동 주변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각 동 주변(동 출입구별 1개 구역)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배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은 단지 모형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와 인접하여 근린공원 및 우수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공원 등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주변현황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단지 내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등은 동별·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1,442대(공동주택: 1,423대, 근린생활시설:19대)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저층부는 석재, 도장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면적 및 자재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색채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분산 배치 될 예정이며, 동·호수별 지하층 입구와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 창은 전층 자동개폐창으로 적용되고,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내 창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피트니스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펌프실, 전기실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3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 어린이집/경로당/관리사무소/방재실/MDF실/주민회의실/라운지카페/주민공동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부대시설 옥상, 측벽, PIT등)에는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우수저류조/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용전기요금 발생됩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보안등 및 CCTV 위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본 공사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그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내 CCTV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 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동별 유의사항

-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104동, 109동 인근 문주에는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Drop off-zone과 키즈스테이션이 설치예정이오니 모형과 배치도에서 위치 확인바랍니다.
- 103동 인근에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101동, 102동 인근에 지하주차장 부출입구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세대 빛공해(눈부심) 등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2동, 103동 지하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해당동 세대에 소음이나 업종에 따른 음식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동 저층부 세대에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3동, 107동, 108동, 109동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전시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차량 출입구(문주)에 인접한 비상차량(이삿짐,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의하여 소음, 진동, 불빛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필로티 옆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에 인접한 101동, 106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송수구 및 상수도소화전 위치가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일부 위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 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제습기가 설치 예정입니다.
- 101, 103, 107동 일부에 커튼월록이 설치 됩니다.
- 단지내 유적공원 사용을 위한 외부인의 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m~7m	지하2층:2.7m, 지하1층:2.3m	2.7m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의 책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3.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관한 등급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주촌면 선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청자 : 주식회사 디앤아이  
3. 대지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3-2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동충격 차단성능	★★★★
2. 공명충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공제체의 차음성능	★★★★
4. 공동주택(단독, 공동)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차음도 측정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법성	★★★★
3. 수축팽창률 정공부분	★
4. 수축팽창률 결공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밀 단열의 설계적 가치	—
2. 기밀 단열 시공률의 보장	—
3. 통풍기 성능 향상률	—
4. 열교환기 성능 향상의 대체적 책임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소비량 및 관리지침 제시	★
7. 간·계통에너지 사용	—
8. 저온도 에너지 사용	—
9. 온풍 보온 및 사후관리 지원	★
10. 환경친화적 제품(소재) 사용	★★★★
11. 저온도 에너지 사용	★★★★
12. 차등온도 제어의 사용	★★★★
13. 벽체열량 저감 제어의 사용	★★★★
14. 녹색건축에서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표시를 설치	—
16. 재활용률	—
17. 자원 및 환경지속가능성	★
18. 수자원 절약 사용	★★★★
19. 물 사용량 표시사항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열내·외 보행자 친화도 조성 및 연료	★★★★
2. 미용공학적 완성성	★★★★
3. 자연채광 및 자연기후로써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환경에 적합한 계획	★★★★
6. 환경·생태적 질서 및 채광일 계획	★★★★
7. 사후차 폐기물 처리	★★★★
8. 녹색건축에 관한 정보제공	★★★★
9. 인공재료의 사용량 억제	★★★★
10. 공동주택의 시공질 저하예방	★
11. 가시도·가법성 및 수축팽창률의 표시수준	★
12. 세대 내 및 외 통풍률	★
13. 용해현상 방지시스템	★
14. 방화내화 성능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고설비	★
2. 제어설비	★
3. 내화성능	★
4. 수명관리	★
5. 위험도 평가	★
6. 화재대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7월 12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주촌면 선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G-REED-P-2022-0768-9
건축주 : 주식회사 디앤아이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공급(예정)일 : 2022년 7월 29일	유효기간 : 2022. 07. 12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3-2	시행규칙 : 건축법(제117호)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규칙 중 일반 규격
층수 : 지하 2층, 지상 29층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면적 : 178,195.7742㎡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인증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한국건축예비인증서 발급규칙
설계자 : 원익디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2년 7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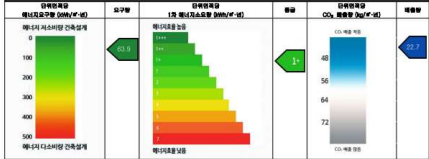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주촌면 선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022-08-14-0169
건축주 : 주식회사 디앤아이	평가자 : 에너지코리아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3-2	인증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규칙
층수 : 지하 2층, 지상 29층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177,641.0717㎡	유효기간 :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에 의함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인증등급 : 1등급
설계자 : 원익디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규칙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결과

구분	단위인증등급	단위인증등급	단위인증등급	단위인증등급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1차 에너지소비효율(연비)(kWh/㎡·년)	CO <sub>2</sub> 배출량 (kg/㎡·년)
난방	9.0	54.7	40.0	11.4
냉방	27.0	36.5	27.0	7.4
냉수	6.2	5.8	15.4	2.6
전기	13.0	2.8	7.8	1.8
합계	65.0	99.8	90.4	23.7

본 단위인증등급 에너지소비효율 : 건축물별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단위인증 등급에 따라

본 단위인증등급 1차 에너지소비효율 : 건축물별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단위인증 등급에 따라


본 단위인증등급 CO<sub>2</sub> 배출량 : 해당 소규모에서 배출된 단위인증등급 인증받은 건축물

본 단위인증등급 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 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받은 건축물

본 단위인증등급 1차 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 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받은 건축물

본 단위인증등급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 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받은 건축물

2022년 8월 24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수신자 : 주식회사 디앤아이  
(주요) 한국에너지공단  
제 목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 송부 [주촌면 선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1. 귀사의 무관한 발견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주촌면 선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은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5조에 의거한 성능평가를 거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으나 업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건축물명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합 여부		비고
	충당도	적합 여부	
주촌면 선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적합	적합	

3. 합당치 없는 인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우측하단 여과도를 통하여 인증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보고서 1부, 끝.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수신자

발신자 : 이명환 / 본부장 / 02-2600-1111

발신처 : 서울 광복로자유타워 209 (2022.6.23.) / 1111 / www.kocasa.or.kr

전화 : 권순 / 02-2600-1111 / white@kocasa.or.kr / http://www.kocasa.or.kr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2-101-0010200 호	₩ 350,939,61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분양보증 약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59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 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6.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고지사항

· 본 주택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 위탁자인 (주)디엔아이(이하 “위탁자”라 함), 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DL이앤씨(이하 “시공사”라 함),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디엔아이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디엔아이와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디엔아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디엔아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디엔아이와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이하 “시공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법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하나자산신탁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7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8.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5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기상이변, 문화재의 발굴 및 전염병 발생, 원자재 수급 불균형, 노사분규, 파업 등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법원의 공사중지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며,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 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 [www.elife.co.kr](http://www.elife.co.kr)**

■ **주택전시관 및 분양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555-4번지 내 ☎ 055-335-1777**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주체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